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66
----------	-----

2021. 7. 20.(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6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7월 13일

-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신용식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사유

○ 근거법령 개정 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변경(안 제3조)
 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→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

3. 검토보고 요지 (김주희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명을 정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행안부에서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징수·채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을 제정(시행 2017. 3. 28.)하였고,
 - 법 제정에 따라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에 명시되었던 도에서 시·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관련 규정도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제24조제2항으로 옮겨짐.

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

제24조(특별시세·광역시세·도세 징수의 위임 등)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(시·군·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·군·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)은 100분의 3으로 한다.

- 안 제3조는,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관련 규정이 기존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제24조제2항으로 옮겨짐에 따라, 해당 인용 법령 명을 정정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징수교부금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가 충청북도 도세(이하 “도세”라 한다)를 징수하여 충청북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·군에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3조(징수교부금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- 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- 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「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6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6월 3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변경(안 제3조)
 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→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”을 “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징수교부금) 충청북도지사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가 충청북도 도세(이하 “도세”라 한다)를 징수하여 충청북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·군에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3조(징수교부금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관계 법령

□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

제3조(징수교부금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가 충청북도 도세(이하 “도세”라 한다)를 징수하여 충청북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·군에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.

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

제24조(특별시세·광역시세·도세 징수의 위임 등)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(시·군·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·군·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)은 100분의 3으로 한다.